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이우청 의원 외 13명)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8
----------	-----

발의연월일 : 2025. 1. 10.

발의자 : 이우청·박승직·윤철남
이철식·이충원·권광택
김희수·김대일·황명강
김진엽·김창기·김재준
서석영·남영숙 의원
(14명)

1.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련법령 발췌: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검토완료

§ 예산입법담당관-21(2025. 1. 6.)호

나.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민자활성화과 [정책기획관-333(2025. 1 .7)호]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 [정책기획관-333(2025. 1 .7)호]

라. 해당부서 의견: 해당없음

§ 재난대응과 [정책기획관-333(2025. 1 .7)호]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7.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중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을 입은 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손실보상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실시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당사자는”을 “청구인은”으로, “기피”를 “해당위원의 기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을 “대상이 되는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3.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u><신설></u></p>	<p>제5조(손실보상)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중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u></p> <p>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을 입은 자</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u>제5조의2(손실보상 기준 등) ①</u> <u>도지사는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u></p> <p><u>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u></p>

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 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생략)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 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청구인은-----

----- 해
당 위원의 기피 -----

----- 대상이 되는 위원-----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의2(손실보상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른다.
- ④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 발생 정도는 재난현장마다 예측이 불가하여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소방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장 김격태 (054-880-6220)



경 상 북 도



수신 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난대응과-273(2025.1.3.)호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5조(손실보상)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인 추가, 제5조의2(손실보상 기준) 신설로 인해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방활동 특성상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의 횟수, 보상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으며, 의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 다만, 조례에 따라 손실보상을 결정할 시, 재정부담이 예측되는 바,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에 반드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윤종모	예산총괄팀장	최현숙	예산담당관	차순애	전결 2025. 1. 6.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69	(2025. 1. 6.)		접수	재난대응과-355	(2025. 1. 6.)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풍천면 도청대로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369	/ lackof2pro@korea.kr		/ 비공개(5)

"아이도 행복이도 희망이도 미래도"